

일본 전파산업(ARIB) 뉴스요약

NO. 25 (1996년
1월 23일)

인터넷을 이용한
우정연구소의 정보 제공

정 지 은 / TTA 표준화2국

해 문자, 도형, 정지화
에 의한 뉴스 등의 정
보외에 텔레소프트웨
어 등의 각종 데이터
제공을 가능케 하는
한편 대화형(Interac-

우정성의 부속기관인 우정연구소에서는 인터
네트를 통해 연구성과(우정사업, 정보통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동 연구소는 우정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도 하고 있다.

정보제공은 영어 및 일본어에 의한 문자정보,
화상정보, 일본어의 음성정보로써 정보제공의
개요, 우정연구소의 조직구성과 연구내용, 안내
도, 1988년~1994년 조사연구 개요, 1994년도 조
사연구보고서 등의 요약 및 부속자료에 관련된
정보 등을 서비스 한다.

서비스는 1996년 1월 16일부터 제공되며, 우정연
구소내에 WWW(World Wide Web) 서비스를 설
치하여 외부의 접속에 대응하여 정보를 발신한다.

접속주소는 [http : //www.iptp.go.jp/](http://www.iptp.go.jp/) 이다.

NO. 26 (1996년 1월 30일)

지상데이터 다중방송의 실용화를 위한 제도개정

우정성은 다중방송의 고도화, 다양화를 도모
하기 위해 TV방송의 전파에 중첩하여 하는 데
이터 다중방송을 지상방송에 도입하기로 하고 1
월 19일 관계성령 등의 개정을 전파감리심의회
에 자문하였다.

데이터 다중방송은 종래의 문자다중방송에 비

해 문자, 도형, 정지화
에 의한 뉴스 등의 정
보외에 텔레소프트웨
어 등의 각종 데이터
제공을 가능케 하는
한편 대화형(Interac-

tive)의 정보제공 기능을 실현할 수 있고 향후
전자신문방송 등 방송전체의 멀티미디어화의 선
구적인 서비스가 다수 출현하리라 기대된다.

또 면허신청절차의 정비를 위해 별도의 무선
국 면허절차를 개정할 예정이다.

1. 방송법 시행 규칙의 부분개정에 대하여
방송 구분에 표준 텔레비전·데이터 다중방송
을 추가한다.
2. 전파법 시행 규칙의 부분개정에 대하여
초단파 데이터 다중방송 및 텔레비전·데이터
다중방송의 정의를 개정한다.
3. 무선설비 규칙의 부분개정에 대하여
텔레비전·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조건을 정한다.
4.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의 부분개정에 대하여
텔레비전·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구역
및 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한 지침을 정한다.
5. 표준 텔레비전·데이터 다중방송 및 고정밀 텔레비
전·데이터 다중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의 부분
개정에 대하여
표준 텔레비전·데이터 다중방송에 관한 송신
의 표준방식을 정한다.
6. 방송보급 기본계획의 부분변경에 대하여
텔레비전·데이터 다중방송의 방송대상 지역
및 방송계의 수의 목표를 정한다.

NO. 27 (1996년 2월 6일)

「기술창조 입국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기본계획」의 자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기본계획 책정 -

우정성은 1월 22일, 전기통신기술심의회(회장 西澤潤一東北大學學長)에 「기술창조입국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다. 동심의회에서는 「종합정책위원회」를 설치, 본건의 심의는 동부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답신은 1996년 5월경에 될 예정이다.

【자문의 개요】

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일본의 과제인 경제분야의 확대, 여유있고 풍족한 국민생활 실현, 국제사회에의 공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은 기술의 도입에서 보듯이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향후 21세기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기술창조입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래의 구미 선진국에 추종하는 catch-up형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개척자형의 연구개발로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종래대로 일본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세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며 풍부한 생활의 실현과 산업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기본방침과 추진정책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련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더욱이 첨단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으로 적극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 주변의 정보세력을 기본으로 동법에 의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책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동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도모해가면서 특히 정보

통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와 그 우선순위, 개발 목표, 개발시기 등을 명기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의 책정이 요망된다.

2.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광통신, 우주통신, 이동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휴먼 인터페이스, 지구환경계측 등의 폭넓은 분야를 종합적으로 또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 연구까지를 계획적으로 추진해가고 기술창조입국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이다.

NO. 28 (1996년 2월 13일)

1995년도 「통신이용 동향 조사」의 결과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기본계획 책정 -

조사결과와 요점

◎ 휴대전화를 자택에 보유하는 세대가 10세대중 1세대
휴대전화를 자택에 보유하고 있는 세대비율(보유율)은 10.6%로 10세대에 1세대에 이른다. 팩시밀리의 보유율은 16.1%, 무선호출(포켓벨)은 15.0%로 1994년의 조사와 비교하면 휴대전화(전화조사는 5.8%)가 4.8 포인트, 팩시밀리(전화조사는 13.7%)가 2.4 포인트, 무선호출(포켓벨)(전화조사는 11.9%)는 3.1 포인트 증가하였다.

각각의 기기를 보유하는 세대에서는 사업상 목적의 사용비율이 줄고 개인 용도로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보급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리라 예상된다. 휴대전화는 사업장에서도 크게 보급되고 있고 보급율은 1994년의 조사(24.7%)보다 16.3포인트 증가하여 41.9%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등등 외에 2개산업 4종류에서 50%을 넘으며, 가장 높은 건설업이 74.1%에 달하고 있다.

1995년 7월에 서비스 개시된 PHS(간이형휴대

전화)는 조사시점의 사업장보유율이 1.6%에 그쳤지만 관심은 높아 30.0%의 사업장에서 향후 보유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 PC통신은 3%을 넘는 세대가 이용 희망

세대의 PC통신 이용율은 2.6%이지만 향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하는 세대는 34.4%에 이른다. 이 비율은 1992년의 조사(12.8%)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확대를 기대한다.

PC통신을 이용하고 싶다는 세대에서 희망하는 용도로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게시판, 「취미나 여행 등 개인정보 입수」를 원하는 세대가 68.2%에 이르고 「통신판매(online shopping)」(37.4%)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전자메일, EDI는 50%, LAN은 70%의 기업에서 이용할 전망

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기업의 이용율은 전자메일이 25.8%, EDI가 40.0%, LAN(지난조사는 39.6%)가 13.6포인트 각각 증가하였다.

이용하고 있진 않지만 구체적인 이용예정이 있는 기업을 포함하면 전자메일이 49.7%, EDI가 48.8%, LAN이 71.0%에 이른다.

◎ 인터넷은 11.7%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40%가 「우선 이용하여 추이를 보고 있다」

주목되는 인터넷 기업의 이용율은 11.7%였다. 단, 종업원수 2,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34.3%에 이른다.

인터넷 이용기업중 전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18.1%, 일부 사업장, 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81.9%였다. 또, 인터넷의 용도는 「우선 이용하여 추이를 보고 있다」라는 기업이 43.1%로 가장 많고 「거래처와의 협상 등에 메일을 이용하고 있다」가 40.8%,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가 37.3% 등으로 되어 있다.

◎ 지진을 교훈으로 30%가 넘는 기업이 통신네트워크

의 백업대책으로 이용

1995년 1월 阪神淡路대지진으로 자사통신네트워크에 어떤 피해를 받은 기업은 19.6%였는데 이 지진을 교훈으로 통신네트워크의 백업에 관해 새로운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또는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기업은 36.3%에 이른다.

대책의 내용은 「백업용 회선 확보」라는 기업이 40.3%로 가장 많고 「컴퓨터센터 등의 내진성 확보」가 33.7%, 「컴퓨터센터 등의 분산성」이 22.7%, 「자가발전시스템 등의 긴급용 전원 확보」가 18.3% 등으로 되어 있다.

NO. 29 (1996년 2월 20일)

우정행정에 관계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요망의 검토상황

우정성에서는 현재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추진, 신규사업의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으며 1995년 3월 31일에 내각에서 결정한 「규제완화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추진계획 (우정성관계)

「규제완화추진계획」은 금년 3월말에 개정하기로 되어있으며 우정성에서는 이 계획개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내외의 의견·요망을 수렴하여 그 의견들을 취합 결과를 1995년 11월 30일에 공표하는 등 투명한 절차로 노력하면서 검토작업을 예의 진행하고 있다. 또 1995년 12월 14일에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규제완화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규제완화추진계획」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 내용검토를 예의 진행해 가고 있다.

향후 3월말의 「규제완화추진계획」의 개정에 대해 다시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해가고 있으며

계획개정시에는 이들의 의견·요망에 대한 대응 상황(현행 제도·운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 필요성, 근거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 **우정행정에 관계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요망의 검토상황 (전파·방송 관련)**

우정성에서는 ① 1995년 11월 24일까지 우정성에서 받은 내외 의견·요망(동월 30일에 공표) 외에, ② 1995년 11월 30일까지 내각관방.총무청에서 받은 「규제완화 등에 관한 의견·요망」(동년 12월 22일에 공표), ③ 행정개혁위원회 규제완화소위원회가 1995년 7월 27일에 공표한 「규제완화에 관한 논점공개」에 대해 9월 30일까지 동소위원회에서 받은 의견·요망, ④ 1995년 12월 14일에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된 「규제완화의견」 및 ⑤ 1995년 11월 16일에 총무청에서 규제완화소위원회에 제출한 「규제완화 follow-up 조사결과」에 대한 「이번 조치에 대해 더욱 완화 등을 구하는 의견」 중 우정성 관계의 의견·요망에 대한 1996년 1월 25일 현재의 검토상황을 취합하고 있다.

이 검토항목중 전파·방송 관련은 다음과 같다.

【**전파**】

- 주파수할당에 대한 경매제도 도입 검토
- 무선국면허에 관계되는 외자제한의 재고
- 자막방송 등의 보완프로그램만을 하는 문자다중방송의 면허제도 고려
- 면허절차의 간소화 등 (실험국 등)
- 방송국의 재면허신청서 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삭감·감
- 방송국의 면허절차 간략화 (조서관계 등)
- 육상자영 무선국 면허갱신 절차의 완화 (갱신기간 연장)
- 항공기국의 정기검사를 민간(인정공장)으로 위탁
- 우정성, 운수성의 검사업무 및 검사데이터 일원화

- 토·일·경축일 및 집무시간외에 무선검사 실시
- GMDSS 기기의 선상에서의 검사
- GMDSS 기기의 육상보수점검 의무기간 재고
- 면허수수료 재고
- 전파이용의 보급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제지원조치 확충

【**방송**】

- 위탁방송사업자의 시청료 결정에 관계되는 규제완화
-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
- CATV 사업자의 직원에 외국국적보유자의 취업 가능화
- CATV 규제의 문서공개와 허가과정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역할 명확화
- 무선CATV(가입자계의 무선시스템)의 도입
- CATV의 재송신 동의, 외자규제의 철폐
- CS방송보급을 위한 정책지원

【**자격·기준·인증**】

-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조종이 간단한 소형레이더의 조종에 대하여 무선종사자 자격을 불요화
- 1.2GHz대로 인가된 소전력데이터 전송모뎀에 대하여 연속 송수신규제 완화
- 전기통신기기인증의 개선
- PHS(간이형휴대전화시스템)의 국제적인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외국에 대해 PHS 무선설비상호인증의 실현 움직임

【**기타**】(전파·방송 관련부분만)

- 통신·방송융합분야의 제도에 대하여 재고 검토
- 전화·CATV 사업자에 대하여 1의 허가로 전국공용
-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는 대기업 우선

이며, 개인이용자의 요구는 방치되거나 뒷전

- 도로점용규제 등의 완화
- 정보통신의 이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는 모 든 제도의 재고
- 사회·행정의 정보화
- 정보화를 위한 정책지원
- 외국사업자를 배려한 전기통신부분의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의 정비
- 재해부흥에 따른 정보인프라정비에 관한 규제완화

NO. 30 (1996년 2월 27일)

위성디지털 다채널 방송의 도입에 관한 성령개정

1. 방송보급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1) 방송보급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기본사고

① 방송법 제2조 2에 의거 방송의 계획적인 보급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방송 보급 기본계획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위성디지털 다채널 방송의 도입에 관련되는 부분을 변경한다.

② 변경에 있어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로 위성방송의 특성과 디지털방송의 향후 발전성에 입각하여 향후 위성발사 상황이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구체적인 변경

【보급을 위한 지침】

① 위성디지털 다채널 방송의 보급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다음사항을 명기

- (ㄱ) 디지털기술의 특성과 장래 발전성에의 배려
- (ㄴ) 향후 위성발사 상황이나 방송에 관한 수요의 동향에 입각한 유연한 대응
- (ㄷ) 화상품질, 음성품질의 유지·향상

②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표준텔레비전 방송,

초단파방송 및 데이터방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

③ 1994년의 방송법 개정에 따라 제도화한 수탁내외방송(이른바 영상국제방송)에 대한 규정도 병행하여 추가

【집중배제원칙에 관한 지침】

집중배제규정의 완화방침을 명기

※ 방송법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

【목표 수 설정】

① 이미 궤도위치에 있는 위성에 할당 가능한 주파수 (13중계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 수를 설정

- 표준 텔레비전 방송 : 70정도
- 초단파방송 : 200정도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에 대하여

(1) 제도의 취지와 현황

① 방송이 유한하고 희소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 것.

국민생활, 표현·언문을 갖는 중요한 매스미디어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을 이유로 가능한 사업자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이며 현재 원칙적으로 1사업자가 1방송국으로 한정

※ 방송법 제2조 2

전파법 제7조 제2항 제4호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제9조

② 상기 취지를 근거로 CS방송에서도 아래와 같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적용

- ㉠ 텔레비전 방송: 2 프로그램 이내
- ㉡ 초단파방송 : 12 프로그램 이내

※ 방송법 제52의 13 제1항 제3호

방송법시행규칙 제 17조의 8, 부칙 제 2항

(2) 위성 디지털 다채널 방송 관련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라 중계기의 분할이

용이 가능케 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다 채널화가 가능하게 되며 복수채널을 사용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는 점 등으로 한층 완화를 실시

㉠ 텔레비전 방송 : 12 프로그램 이내 (2중계기 이내)

㉡ 초단파방송 : 100 프로그램 이내 (1중계기 이내)

* 방송법시행규칙 제 17조의 8, 부칙

* 디지털 분할에 따른 다채널화 (1중계기 당) :
텔레비전 방송 1프로그램 → 6 프로그램 정도
초단파방송 12프로그램 → 100 프로그램 정도

*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예 :

near video on demand

(복수채널을 이용하여 동일 프로그램(영화등)을 시간차를 두고 반복 방송하는 서비스)

주) 더욱이 프로그램 검색서비스에 관계되는 위탁방송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법 시행규칙 제17조의 8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심사에 있어서 동 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위탁국내 방송에 대한 디지털방송에 관계되는 인정방침)

3. 디지털 방송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1) 개요

위성디지털 다채널방송을 실용화하는데 있어서 표준텔레비전 방송, 초단파방송 및 데이터방송 중 디지털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제정 및 무선설비 규칙을 개정한다.

(2) 경위

전기통신기술심의회의 일부답신인 「디지털방송방식에 관계되는 기술적조건 중, 12.2 ~ 12.75GHz를 사용하는 위성디지털 방송 방식의 기술적 조건」(1995년 7월 24일)에 의거하여 기술기준을 책정한다.

내외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WTO 통보¹⁾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한다.

(3) 기술기준의 기본

디지털 방송의 메리트를 살리도록 각 방송매체(위성, 지상, CATV)간 방식의 정합성 및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배려한다.

① 표준텔레비전 방송 등 중 디지털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제정)

a. 표준텔레비전, 초단파방송 및 디지털방송 중 디지털 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을 하나의 성령으로 제정한다.

b. 영상, 음성 데이터의 입력신호 및 부호화 방식 및 다중화방식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인 MPEG-2²⁾에 준거한 방식을 채용한다.

c. 전송방식에 대해서는 제외국과 같은 방식(QPSK 방식)을 채용

d. 스크램 방식은 안전성이 높은 블록암호방식을 채용

② 무선설비규칙 (개정)

a. CS 디지털방송의 송신설비에 관한 허용편차 (전송속도 등), 변조파 스펙트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한다.

b. 기타 주파수의 허용편차, 전파의 편파 종류 등에 대해서는 종래의 CS방송과 같은 규정으로 한다.

【참고】

¹⁾ WTO 통보

생산품의 특성, 생산방법 등에 관한 강제규격을 정할 때에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며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이다.

²⁾ MPEG-2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연휴하여 표준화한 영상, 음성 등의 디지털 압축 및 패킷 다중 방식·폭넓은 화질·음향에 대응함과 동시에 영상, 음성, 데

이터 등의 유연한 조합이 가능하다.

4. 기타

(1)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

JCSAT-3의 12.5~12.75GHz대의 13중계기를 규정하고 있다.

(2) 기타

전파법시행규칙 등의 관계성령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NO. 32 (1996년 3월 12일)

시각장애자의 TV 등의 시청실태와 방송에 대한 요구

1. 앙케이트 조사 개요

(1) 시각장애자에 대한 앙케이트

- ① 일시 : 1995년 12월 ~ 1996년 2월
- ② 응답자수 : 178인 (동경도 등 5都道府縣의 시각장애자)

(2) 청각장애자에 대한 앙케이트

- ① 일시 : 1995년 12월
- ② 응답자수 : 557인 (동경도 등 11都道縣의 청각장애자)

2. 조사결과 요약

(1) TV,라디오의 시청실태

- 텔레비전의 시청시간은 1일 1~3시간 정도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자 41.6%, 청각장애자 54.1%) 그 이상 시청하고 있다는 응답을 합하면 청각장애자 70.7%, 시각장애자 68.6%가 1일 1시간이상 시청
- 시각장애자의 라디오 청취시간은 1일 6시간 이상의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다.

【참고】

일반시청자의 시청시간 (1995년)

TV : 평균 3시간 45분 (1일 1시간이상 시청하고 있는 자는 88.9%)

라디오 : 평균 41분

(2) 자주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 시각장애자 및 청각장애자 모두 1위는 뉴스 (각각 86.0% 및 85.1%)이고 다음으로 드라마·영화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3) 정보원으로서 중시하는 매체

① 뉴스 등의 정보원으로서 주로 이용하는 매체로는 시각장애자는 85.4%가 라디오로 응답(다음은 TV로 80.9%), 청각장애자는 신문(91.27%)에 이어 TV가 2위 (83.1%)

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정보원으로 주로 이용하는 매체로는 시각장애자는 75.3%가 라디오로 응답. 청각장애자는 신문(86.7%)에 이어 TV가 2위 (74.5%)

③ 재해정보의 정보원으로서 주로 이용하는 매체로는 시각장애자는 90.5%가 라디오로 응답하고 이어서 TV (71.9%). 청각장애자는 TV가 1위 (90.8%)

(4) 현재 TV 프로그램에 대한 요망·의견

- 많은 시청각장애자는 TV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요망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다.

【주요 의견】

시각장애자 : ① 정보가 화면에만 표시되는 것에 불만 (예 :「보시는 대로입니다」, 외국어영화의 일본어 자막, 자막삽입에 의한 뉴스 속보)

② 해설프로그램 (注) 수를 증가하기를 바란다.

청각장애자 : ① 보도프로그램에 자막·수화의 증가를 요망

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

램에 자막.수화의 증가를 요망

③ 자막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확대를 요망

(注) 「해설프로그램」… TV음성 다중방송의 하나로 시각장애자에 대해 TV프로그램의 장면.상황이나 출연자의 움직임 등을 부음성으로 설명할 것

(5) 방송서비스에의 장애 요구

① 시각장애자 중 76.4%가 점자방송(注)이 필요하더라는 뜻의 응답(특히, 시각장애자에 관한 정보, 신문낭독 등을 점자방송으로 실시하기를 바램)

② 시각장애자를 위한 전문 라디오국에 대해서는 72.5%가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

③ 청각장애자를 위한 전문 TV국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91.5%)가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특히 뉴스, 드라마 등에 대해 수화 또는 자막방송의 요구가 강함)

(注) 「점자방송」… 데이터방송의 일종으로 송신된 점자정보를 수신단말이 받아 점자 pin display나 합성음성 등에 의해 표시하는 것

3. 향후 대응

본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시청각장애자를 위한 전문방송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회」에 대하여 기존의 방송에 대한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의 충실방책이나 장애자를 위한 전문방송의 실현을 위한 제반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금년 4월을 목표로 조사연구회의 보고를 취합할 예정이다.

NO. 33 (1996년 3월 12일)

우정사업에 있어서 고도정보화 조달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조사연구

◎ 우정사업 조달면에서의 CALS적 수법의 효과적인 도입 구미 및 민간기업 조달면의 효율화.고도화에

유리한 방책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CALS의 선진적 도입사례 조사를 근거로 우정사업의 조달면에 CALS 도입방책에 대하여 제언을 하였다.

(注) CALS : 본래 미국국방총성의 「컴퓨터에 의한 군사지원시스템 : Computer-Aided Logistic Support」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산.조달.운용지원 종합시스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광속상거래 : Commerce At Light Speed」즉, 광케이블상에서의 상거래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칼스라고 읽는다.

1. 해외 및 일본 내에서의 CALS 동향

미국 국방총성에서 전략병기의 조달을 중심으로 개발된 CALS적 수법이 민간산업의 경영전략으로서도 효과적으로 구미제조업, 유통업에서 보급·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연방 정부에서는 1997년 1월부터 정부조달의 전자화(EC)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그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내 선진기업에서도 CALS적 수법의 도입에 의해 기업계열을 초월한 상거래의 전자화가 진행중이다. 특히 미국 및 일본의 유통분야에서는 재고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파악하며, 수요예측, 출하량 결정·발송 등, 물류, 재고관리까지 포함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CALS적 수법의 도입이 발전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2. 조달시스템의 고도정보화 방향성과 도입방책

(1) 목적으로 하는 방향성

① 내외 선진기업의 사례 등을 근거로 CALS적 수법의 도입에 의한 조달사무의 고도정보화에 있어서는 물류, 재고관리를 포함한 물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최적화를 포함한 전개를 도모해야 한다.

② 우정성에서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다중·다량의 물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조달시스템의 고도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원활한 데이터이용에 필요한 표준규격의 채용, 오픈시스템의 구축에 의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다.

(2) 도입방책

「조달기간의 단축」, 「사무비용 삭감」, 「사무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하여 아래의 CALS적 수법을 도입해야 한다.

① 업무 절차의 재고 (BPR)

- 조달문서, 규격서, 각종장부, 의사결정, 확인, 전달 등의 전자화를 전제로한 업무절차 재고

②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 문서, 규격·도면, 화상 등의 각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
- 우정성내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로의 액세스는 보안레벨에 따라 관리

③ EDI(전자데이터 교환) 도입

- 우정성과 기업간 상거래의 전자화

④ 표준규격의 채용

- 오픈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형식, 통신절차 등의 규격은 국제표준 등을 채용하여 그 보급에도 공헌한다.

3. 도입에 있어서의 유의점

우정사업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CALS적 수법 도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1) 법적제약

상법, 세법, 회계법 등에서는 입찰서, 견적서, 계약서 등의 Paper로의 보존, 날인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자화에 대하여 관계성청과 연휴를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 거래업자에게 주는 영향 배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프로토타입에 의한 실증실험

상기의 도입방책에 관련하여 프로토타입에 의한 실증실험을 하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분석·검증하여 본격적인 고도정보화 조달시스템 구축에 반영해야 한다.

NO. 34 (1996년 3월 26일)

지상데이터 다중방송의 실용화를 위한 제도개정

우정성은 다중방송의 고도화,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TV방송의 전파를 중첩하여 하는 데이터 다중방송을 지상방송에 도입하는 것으로서 금년 1월 19일, 관계성령개정 등에 대하여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하였으며 3월 15일 동심의회에서 원안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뜻의 답신을 받았다. 본건의 개정성령에 대해서는 공포일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다.

데이터다중방송은 종래의 문자다중방송에 비해 문자, 도형, 정지화에 의한 뉴스 등의 정보의 텔레소프트웨어 등의 각종 데이터의 제공을 가능케 하는 한편 대화형(인터랙티브)의 정보제공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며 전자신문, 방송 등 방송전체의 멀티미디어화에 선구적인 서비스가 다수 출현해 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문자다중방송과 데이터다중방송과의 융합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면허절차 간소화 등, 면허신청절차의 정비를 위해 별도 무선국 면허절차규칙(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제15호)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지상데이터다중방송의 면허신청에 대해서는 관계성령 등의 시행후 수시접수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관계법령

- 1. 방송법시행규칙 (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 제10호)
지상계에 의한 방송의 구분에 표준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을 추가.
- 2. 전파법시행규칙 (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 제14호)
초단파 데이터 다중방송 및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의 정의를 개정.
- 3. 무선설비규칙 (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 제18호)
표준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조건을 정함.

- 4.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1950년 전파감리위원회규칙 제21호)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및 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한 지침을 정함

- 5. 표준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 및 고정밀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1994년 우정성령 제47호)

수직귀선소거기간을 사용하는 전송방식에 의한 표준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을 정함.

- 6. 방송보급기본계획 (1988년 우정성고시 제660호)

지상계에 의한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의 방송대상 지역 및 방송계의 목표 수를 정함. 